

**재벌총수 구속!
전경련 완전해체
국회토론회**

2017. 1.17 (화)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윤종오 의원실 · 김경협 의원실



재벌총수 구속! 전경련 완전해체 국회토론회

발제 1 송영섭 변호사 : 총수 구속과 전경련 해체

발제 2 김남근 변호사 : 재벌총수 일가의 불법이익 환수

토론자 : 전성인 교수, 윤종오 국회의원,
박유기 현대자동차 지부장

일시 : 2017년 1월 17일 (화)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

주최: 전국금속노조, 윤종오 의원실, 김경협 의원실

※ 재벌총수 구속처벌 촉구 결의대회 1월 18일 (수요일) 14시 삼성본사 및 특검 앞

**“재벌총수 구속”, “총수일가 불법이익 환수”
“전경련 완전해체” 를 위한 국회 토론회**

<p>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검의 재벌 뇌물 수사의 정점 시기에 정경유착 재벌 총수 구속과 재벌의 불법, 탈법 행위 근절을 촉구함 - 정경유착의 근원지인 전경련의 완전해체를 공론화시킴 - 박근혜·최순실 관련 등 재벌의 불법 이익 환수 법제화를 추진함

차례

1부

14:00 개회식	
개회사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
인사말	윤종오 국회의원

2부

14:10~15:30		사회:함재규 부위원장	
발제	송영섭 변호사	총수 구속과 전경련 해체	20분
	김남근 변호사	재벌 총수일가의 불법이익 환수	20분
지정 토론자	윤종오	국회의원	15분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5분
	박유기	현대 자동차 지부장	10분

3부

15:30~16:00
종합 토론 및 마무리

발제문1.

재벌총수 구속과 전경련 해체

-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원장)

재벌총수 구속과 전경련 해체

금속노조법률원 || 송영섭 변호사

1. 국정농단에서 대기업 재벌들의 위법행위

가. 삼성그룹

- 2014. 5. 10. 이진희 회장 심근경색으로 쓰러짐
- 2014. 9. 15.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 대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종료후 독대(1차), 승마 유망주 지원 요청 ‘삼성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달라’
- 2014. 11. 삼성, 화학과 방산기업 4개 계열사를 한화측에 넘김(2조원 규모)
- 2014년 말 한화, 수년간 맡았던 승마협회 회장사 자격을 삼성에게 넘김
- 2015. 3.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승마협회장 취임
- 2014년말~2015년초 삼성물산이 실적일 과소평가되도록 조작하여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춘 혐의(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이 1.4%에 불과)
- 2015. 5. 26.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결의 공시
- * 문형표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구속) : “대통령이 삼성 합병 찬성 지시”**
- 2015. 7. 7.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회동
- 2015. 7. 10.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
- 2015. 7. 17.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임시 주주총회)
- 2015. 7. 25.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2차), 승마지원 부족을 이유로 질타(*대통령 말씀자료 의 ‘최근 현안에 대한 당부’ 항목 :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 ‘삼성그룹의 복잡한 지분구조 단순화’, ‘후계구도 내부 정리 완료’,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정부 임기 내 승계 문제 해결을 희망’, ‘삼성그룹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돼 미래를 위해 매진하기를 바랍’)

- 삼성고위관계자,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 직후 최씨에 대해 지원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며 이 부회장이 이를 직접 챙겼다’고 진술
- 2015. 7. 26. 이재용 부회장, 그룹 대책회의를 열어 승마에 대한 지원을 지시
- 2015. 7. 28. 박상진 사장(승마협회장), 지원 논의를 위해 독일로 출국(독일에서 최순실과 만나 지원규모와 방법 등을 논의)
- 2015. 8. 26. 최순실의 독일 현지법인인 코레스포츠(비텍스포츠의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 체결, 35억원 가량 송금(최순실은 부동산, 폭스바겐, 강아지 패드 등 구입)
- 비타나 V 등 삼성전자 명의로 산 명마(43억원) 지급
- 2015. 10. 및 2016. 1. 계열사를 동원해 미르(2015년 10월 설립)·K스포츠재단(2016년 1월 설립)에 204억원 자금 출연
- 2016. 2. 15.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3차), 박 대통령, 이 부회장에게 최순실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기획서(장시호가 작성하여 최순실에게 보낸 기획서)를 건내며 9억원 지원 요구
- 삼성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원 후원

나. SK그룹

- 최태원 회장 징역 4년 확정으로 2년 7개월간 복역 중
- 2015. 8. 10. 김영태 SK부회장(당시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최태원 회장과 접견에서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우리 짐도 많아졌다.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 녹취록.
- 2015. 8. 13.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이 안중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구속)에게 “하늘같은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산업보국에 앞장서 나라 경제 살리기를 주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2015. 8. 14. 최태원 회장 광복절 특사
- 김창근 회장, “최 회장을 사면, 복권시켜 주신 은혜 잊지 않고 있다”
- 관세청, 2015년 7월과 11월 두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 SK와 롯데 탈락.

- 2015년 12월 관세청, “서울시내 면세점의 추가 허가를 검토하지 않겠다”
-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 출연
- 2016. 2. 16. 최태원 회장,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면담 직후 김낙회 당시 국세청장이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낼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
- 관세청 담당부서, 면세점 4곳을 추가해도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고
- 2016. 2. 18. 김낙회 국세청장, 안중범 경제수석을 만나 면세점 현안보고
- 2016. 3. K스포츠재단 추가 80억원 요구
- 2016. 4. 29. 관세청, 서울에 시내면세점 4곳 추가 선정방침 발표
- 2016. 7. 최재원 부회장 가석방

다. 롯데그룹

- 2015. 11.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갱신심사 탈락
-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 출연
- 2016. 3. 9. 롯데 CSR팀(사회공헌팀), 신동빈 회장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안)’ 보고. 곧이어 CSR팀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롯데그룹 현안자료’ e메일 전달
- 2016. 3. 14. 신동빈 회장,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대통령 말씀자료 ‘면세점 특허 상실 매우 안타깝게 생각, 개선방안 조속히 마련’)
- 2016. 3. 16. 롯데,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파트너 계약 체결
- 평창 동계올림픽에 롯데백화점, 롯데면세점에서 각 250억원씩 총 500억원 후원 결정
- 2016. 3. K스포츠재단 추가 75억원 요구
- 2016. 4. 29. 관세청, 서울에 시내면세점 4곳 추가 선정방침 발표
- 2016. 5.말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추가 출연했다가 신동빈 회장 횡령사건으로 압수수색에 착수 직전인 2016. 6. 돌려받음
- 2016. 12. 17. 롯데,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라. 현대차그룹

○ 2015년 7월 정몽구 회장,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현대차그룹 현황-BH창조경제 간담회 참고자료’

○ 제조업 파견근로 허용, 정리해고 요건 완화, 휴일근로 중복할증 해소 등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고령자(55세), 고소득 전문직 등 파견허용업무 확대, 뿌리산업(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에 대한 파견 허용, 근로자파견·도급 구별기준을 법률에 명시 /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2016.2.12.)을 통해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 /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8시간 이내에는 50%만 지급(8시간 범위내에서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설 관련 기존 변전소 이설 공사 인허가 비협조(강남구), 영동대로 통과 예정 노선에 대한 통합개발 부재, 지구단위 계획 및 건축인허가 기간 단축 : 현대자동차그룹이 10조 5,500억원에 한전 부지를 낙찰받은 2014년 9월 이후 2016년 2월 15일까지 무려 4차례나 박근혜와 회동을 진행하였으며 그 중 3차례는 독대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자금으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128억원 지급

○ KD코퍼레이션 물량청탁 11억원

○ 플레이그라운드 광고청탁 62억원

2. 재벌총수들의 혐의사실

가. 뇌물공여죄

(1) 관련규정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4조(몰수, 추정)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삼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한다. 그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2)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관계

가) 박근혜 대통령이 각 재단 설립을 직접 기획·추진

박근혜 대통령은 2016.10.20.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① “저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두 축으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것은 전 세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과거 산업화시대처럼 관 주도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두 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② “기업들도 문화가 가지고 있는 세계시장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것이 곧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되며 기업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보았다”,

③ “외국순방 때마다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한 여러 기업들과 그동안 창조경제를 함께 추진해온 기업들이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여나가고자 뜻을 같이하게 됐다”,

④ “물론 이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때까지 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논의 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면 지난(해) 2월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실현을 통한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 기업인들의 문화 체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부탁드린 바가 있고, 또한 지난해 7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기업 대표를 초청한 행사에서도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이 바로 문화 콘텐츠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융복합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⑤ “이에 문화체육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며 어려운 체육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의 성격으로 알고 있다”

⑥ “과거에도 많은 재단들이 기업의 후원으로 이런 사회적 역할을 해 왔는데 전경련

이 나서고 기업들이 이에 동의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재단 설립의 경과이다"

※ 朴 대통령, 청와대 주도 미르·K재단 설립 시인, 프레시안, 2016.10.20.

결국 박근혜대통령 스스로 밝힌 것처럼 본인이 직접 나서 전경련을 중개인으로 대기업들로부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걷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에서도 두 재단 설립과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특히 미르재단 설립절차는 주무부서이자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개입 아래 진행되었다.

미르재단은 2015. 10. 26.설립 신청 다음날인 2015. 10. 27에, K스포츠재단은 2016. 1. 12.설립 신청 다음날인 2016. 1. 13.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다. 두 재단은 모두 설립허가를 신청한지 단 하루 만에 설립허가를 받았다.

당시 미르재단 설립허가절차의 실무를 맡았던 문화체육관광부 김모 주무관은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2015.10.26.에 있었던) 서울 출장 목적은 전경련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기 위해서였"고, "전경련 측에서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연락이 와 과장에게 보고했더니 서울에 가서 받아오라고 지시했"으며, "미르재단 외에 법인을 설립하려는 측을 찾아가 서류를 받아온 적은 없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 문체부 거짓말, 주무관 미르재단 관련 서울출장 허위로 드러나, 노컷뉴스, 2016.9.28.

나아가 김 주무관이 전경련으로부터 서류를 받은 다음 문체부 공무원들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오후 5시에 서류를 받은 김주무관은 그날 저녁 8시 7분 서류를 문체부 서울사무실에서 내부시스템에 등록했고, 8시 10분 사무관이, 8시 27분 과장이 세종청사에서 각각 원격 결재를 마쳤으며, 이튿날 오전 8시 9분 콘텐츠정책관의 결재

를 거쳐 오전 9시 36분 재단등록이 완료되었던 것이다.

※ [단독] 문체부, 미르 설립 허가때 '초고속 출장서비스', 한겨레, 2016.9.28.

문체부는 전경련이 신청한 설립절차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였다.¹⁾ 그 덕분에 미르재단은 2015. 10. 27. 현판식을 진행할 수 있었다. 통상 현판식과 같은 행사는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미르재단은 이미 10. 27. 이전에 법인 설립허가절차가 완료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안중범 전 경제수석이 재단설립과 출연 실무처리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자인한 것처럼 청와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모금 과정을 주도하고 이에 직접 관여하였다. 안중범은 2016. 10. 21.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전화하였던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과 같이 청와대가 문화융성 등 공익적 목적으로 전경련이나 미르재단 등과 접촉한 것이라면, 안중범은 관계부처인 문체부장관등을 통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처리케 하는 등으로 공식적인 업무체계를 가동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

1) 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의원에게제출한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문체부가 허가한 12개 재단법인이 설립 신청을 하고 허가받기까지 최장 98일, 평균 27.9일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의원에게 따르면, 허가 신청 하루 만에 설립허가를 내 준 곳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유일하다고 한다. 이처럼 전경련이 주도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절차는 설립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례적인 배려 속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바,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재단 설립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든 고위 권력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것이다. ※ 국회, 400억 미르재단 하루 만에 졸속 허가, 재단법인 허가 평균 한 달 걸려, 경기인터넷뉴스, 2016.9.11.

결국 재벌기업들에 대해 큰 영향력을 가진 안중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은밀하게 전경련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관여하였다는 것은 안중범, 전경련, 각 기업들 사이에 모종의 대가관계가 존재했던 것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

다) 최순실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여

최순실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최태민의 다섯째 딸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새마을봉사단 총재를 맡고 있던 시절 최태민은 새마을갯기 운동본부 본부장을, 최순실은 새마을대학생 총연합회 회장을 맡았던 관계로 장기간 사적 인연을 맺어 온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할 무렵 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희가 비서실장을 맡았고, 소위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은 정윤희가 발탁한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개명전 정유연)의 승마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의 특별감사를 지시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박근혜대통령이었고,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의 진술에 따르면 특별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해당 문체부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을 경질시킨 사람도 박근혜대통령이었다. 최순실은 박근혜대통령이 혈육보다 믿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 최순실+박근혜‘40년 우정’ 동영상 발굴, 뉴스타파, 2016.9.29.

최순실은 2016년 초부터 자신이 잘 아는 주변의 체육인들에게 K스포츠재단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재단 이사장 등의 자리를 제안하였다. K스포츠재단 1대 이사장이던 정동구는 단 한 달만에 사임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16년 2월 K스포츠재단 2대 이사장에 취임한 정동춘은 최순실이 5년

간 단골로 드나들었던 서울 신사동 소재 운동기능 회복센터 원장을 지낸 사람이었다.

위와 같은 정황이나 진술에 비추어 보면, K스포츠재단이나 전경련과 공식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최순실이 K스포츠재단 이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최순실은 자신의 딸 승마선수 정유라와 함께 지분 100%를 보유한 ‘더블루K’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K스포츠재단의 자금을 빼돌리려고 하였다.

또한 최순실은 미르재단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2016.10.21.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에콜 페랑디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최순실 씨와 차 감독이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차은택 감독은 나를 호출해 회의를 진행했고 예산 사용과 사업 방향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렸다”, “차 감독이 호출해 회의실에 가 보면 그 자리에는 항상 최씨가 있었다.”, “사업 초창기에 한 여성이 나타나 모든 사안을 결정하길래 그 정체가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바로 최씨였다”고 진술하였다. 미르재단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이 최순실을 지목한 것이다.

※ “대통령이 관심 보인 에콜페랑디…최종 결정권자는 최순실·차은택”미르재단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최순실과 차은택 전 문화, 중앙일보, 2016.10.21.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전현직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최순실은 재단에서 이어나 직원을 모집할 때 “재단이 체육과 문화에서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어느 쪽에서 일할지는 나중에 결정해서 알려주겠다”고 하고, 채용 후에도 “보안이 중요하다. 은밀하게 해야 한다. 외부에 알리지 말라”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 “최순실, VIP관심사항…블루K 블루는 청와대라고 말해”, 한겨레, 2016.10.20.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최순실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여 실제로 주도하였다.

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국정 관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수백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있으면서도 외부로 크게 드러나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독 박근혜대통령과 관련된 사업에는 그 존재를 드러냈다.

미르재단의 첫 사업은, 앞서 언급된 바 있는 프랑스 명문 요리학교 에콜 페랑디 한식과정은 만드는 MOU를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은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요리 행사에서 “프랑스 에콜 페랑디 안에 한식 과정을 만들게 된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다”고 말하면서 미르재단의 MOU 체결을 격려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후 미르재단은 에콜 페랑디와 MOA까지 체결하였다. 일반 민간재단의 사업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언급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²⁾

미르재단은 박근혜대통령이 아프리카, 이란 등 순방 당시 언급한 코리아 에이드 사업, ‘케이타워 프로젝트’등 박근혜대통령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논란과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키며 독점적 주체로 참여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가 일개 재단이란 것은 ‘특혜’가 아니고서야 납득하기 어렵다.

※ [단독]미르재단, 박 대통령 아이디어인 ‘K-밀 사업’에까지 관여, 경향신문, 2016.9.23.※ 미르, 정부 역점사업도 한발 앞서 개입, 한겨레, 2016.9.25.

2) 미르재단은 에콜 페랑디와의 사업과 관련된 ‘페랑디-미르학교’를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홍보.체험 시설인 서울 중구 필동에 위치한 ‘한국의 집’에 개설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민간단체인 미르재단은 ‘한국의 집’이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국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사용 목적’을 적용하여 국유재산법이 정하고 있는 연감임대료를 1/2로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일반 민간재단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법령을 어겨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미르재단이 대단한 뒷배경을 가졌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이유이다. ※ 미르재단의 ‘갑질’, 한겨레, 2016. 9. 22

※ [농해수위 국감]미르재단-김재수-aT 연관의혹 '십자포화', 머니투데이, 2016.9.29.

※ 김재수가 공들인 사업 끌려간 미르 그 결정적 순간에 대통령이 있었다, 오마이뉴스, 2016.10.12.

※ 한-이란 'K타워 프로젝트'도 "미르재단이 사업 주체", 한겨레, 2016.10.4.

한편 K스포츠재단은 2016년 5월 박근혜대통령의 이란 순방때 공식 태권도 시범 공연을 주관하였다. 설립된 지 몇 달 되지도 않는 신생 재단이 국기원을 제치고 중요 태권도 행사를 담당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 [TV조선 단독] K스포츠, 대통령 순방행사 참여, TV조선, 2016.8.4.

이처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대통령의 주요한 공식행사와 사업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참여하였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재단, 국기원 등 기존에 존재하는 사업단위들을 제치고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재단이 이처럼 깊숙이 정부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정권 차원의 특혜가 아닐 수 없다.

(3) 뇌물죄의 직무대가성 - 대통령 직무수행 관련 포괄적 뇌물죄 성립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노태우 뇌물수뢰 관련 사건에서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를 정립하였다(대법원 1994.4.12.선고 94도128 판결).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뇌물수뢰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 사이에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직무의 범위 특정, 대가관계 구체성, 실제 영향력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뇌물수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 감독하여 정부의 중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도 역시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속하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이므로 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

③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④ 대통령에 대한 금원 공여의 취지가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집행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달라거나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데에 있었던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도 앞서 본 대통령의 직무와 그 금원의 공여가 대가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포괄적 뇌물죄 성립에 관한 법리는 국회의원 등 다른 고위직 공무원에게

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4) 공갈·강요의 피해자일 뿐?

가) “국민연금을 이용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최순실/박근혜에 대한 뇌물”은 대가관계

-삼성에는 승마단이 없음(한화는 승무단 있음). 승마단 없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대통령이 국민연금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지시

-합병 직후 2015. 7. 25. 독대에서 “삼성 후계승계 문제” 언급하면서, 승마지원 부족 질타!!

-독대 다음날 그룹회의, 박상진 사장 독일 출국, 컨설팅 계약체결, 재단 출연 등

나)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로 직무에 관하여 상대방을 공갈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뇌물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

이 경우 공갈죄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어느 경우에도 뇌물공여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와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공갈한 경우에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로 나뉘나, 두 견해 모두 직무집행의 의사로 공갈을 한 경우 공갈죄의 피해자에게 뇌물공여죄 성립하는 것에 일치한다. 위법한 지시나 명령에 대하여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업무상 횡령·배임죄

(1) 관련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 계열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형이 가중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한다.

배임행위는 그 사무의 성질과 내용, 행위시의 상황을 검토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권한의 남용이건 법률상의 의무위반이건 묻지 아니하며, 법률행위 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도 가능하다. 회사의 대표가 정관이나 이사회규정 등을 위반하여 돈을 지출하거나, 회사에서 지급의무 없는 돈을 지급한 경우가 전형적인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의 주식회사와 객 삼석간의 임대차관계 분쟁해결에 있어 위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보증금 및 손해금을 합하여 금 1,700만원으로 상호인정하고, 일단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피고인 1은 위 객삼석으로부터 고소당한 형사사건으로 처벌받게 됨을 두려워 한 나머지 별도로 권리금 명목을 붙여 금 700만원을 더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회사가 지급할 의무없는 권리금 명목으로 금 700만원을 지급한 소위는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4.2.28.83도2928 판결)

예컨대, 삼성그룹이 지급한 480억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재산이 아닌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에스원, 제일기획 등 회사재산이고, 현대차가 지급한 128억원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의 재산이다. 재벌 총수라 하여 계열 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임의로 사용할 권한은 없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주), 삼성생명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삼성물산(주), (주)에스원, (주)제일기획 등으로 하여금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204억원의 출연을 하도록 하고, 삼성전자(주)로 하여금 최순실, 장시호에게 거액을 지급토록 한 것, 정몽구 회장이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현대모비스(주)로 하여금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128억원의 출연토록 하고, 일감몰아주기로 KD코퍼레이션과 플레이그라운드에 특혜를 준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이 5억원~50억원까지는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고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이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에서는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득액’이란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업무상 횡령·배임에 해당하는 경우 재벌 총수들은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그룹 계열사를 동원하여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 및 최순실측에 전달한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여 부과받게 된다.

다. 위증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등의 죄)

①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00.2.16>

④ 제1항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월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016. 12. 6.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 대통령과 독대 때 삼성물산 합병이나 기부금 출연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 두 재단에 돈을 출연한 사실은 사전에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2015. 7. 25.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시 대통령 말씀자료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등 허위 증언이 드러났다. 다른 재벌 총수들도 모두 재단 출연금과 부정한 청탁과의 대가관계를 부인하였다. 국회 청문회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에 해당하고 선택형으로서 벌금형이 없다.

3. 재벌총수 구속의 필요성

가. 관련규정

헌법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예규 제1178호)

제48조 구속의 사유 중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2. 그 증거가 범죄사실의 입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여부
3. 피의자 측에 의하여 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물리적·사회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4. 피의자 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범죄의 중대성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혐의는

- 뇌물공여죄 :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순실/박근혜측에 480억원을 지급(특가법상 수뢰액 1억 이상이면 수뢰자는 10년이상~무기징역, 특가법상 가중처벌 기준의 480배 뇌물 지급)

- 국회 청문회 위증 : 작년 12월 11일 국회 증언에서 “삼성이 최순실씨 일가 지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증언(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업무상 배임 : 480억원 계열사 재산 손실 및 2014년말~2015년초 삼성물산이 실

적일 과소평가되도록 조작하여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춘 혐의(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이 1.4%에 불과), (특경가법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다. 증거인멸의 우려

-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음.
- 재벌 총수로서 뇌물죄 등 증거인멸이 물리적·사회적으로 가능한 지위에 있음.
- 관련 증인들에 대하여 절대적인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 국민연금을 경영권 승계에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죄질이 나쁨.
- 뇌물공여 액수가 매우 큼.

4. 정경유착 비리의 온상 전경련 해체

가.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1961년 7월 재벌기업들이 ‘부정축재자 처벌’을 피하는 대신 ‘경제재건에 헌신할 것’을 약속하며 발족한 ‘경제재건촉진회’를 모태로 하고 있다. 즉 전경련은 시작부터 군사정권의 경제정책을 돕는 것과 동시에 재벌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그 뒤로도 1988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 자금을 전경련이 주도하여 모금한 사실이 ‘5공 청문회’에서 드러났고,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대선비자금 모금에 연루되어 재벌총수들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1995. 11. 3. 전경련은 음성적 정치자금을 내지 않겠다는 정경유착 단절선언을 반복하였지만, 또다시 1997년 세풍사건, 2002년 불법대선자금 사건(소위 ‘차떼기 사건’) 등 정경유착의 주범으로 국가의 공적기능

을 훼손하였으며, 2016년 초에는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과 탈북자 단체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등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

나. 뇌물의 대가, 노동계약

- 2015.7.24. 대기업 총수 17명 오찬, 박근혜재단 설립취지 설명
 - 2015. 7. 24.~25. 이틀에 걸쳐 삼성 이재용, 현대 정몽구, SK 김창근, 엘지 구본무, 롯데 신동빈등 대기업총수 7명 독대, 기금 출연 촉구
 - 이후 중간 매개역할을 안중범 정책수석,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 2015.9.15. 노사정 합의

- 2015.9.16. 정부와 새누리당 이른바 노동개혁 5법 전격 발의
 - 전날 조인한 노사정 합의와 달리, 추가 논의과제였던 기간제 근로자 기간연장하는 기간제법, 고령자·고소득 전문직·뿌리산업 파견 허용, 사내하청 합법화해주는 파견도급 구분기준 조항 등 비정규직 2법이 전격 포함되어 발의, 그 외에도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 ▷실업급여 지급요건 강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의 명확화 규정누락 등이 있음, 한국노총 강력반발

- 박근혜 대통령, 2015. 10.경 안중범 수석으로부터 출연금 진행상황 보고받는 자리에서 '두 재단의 출연금 규모를 각각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려 모두 1000억원으로 하고, 출연하는 기업들도 10대 그룹에만 한정하지 말고 30대 그룹으로 넓히도록 지시'

- 2015.10.26. 미르재단 입금완료

- 2015.10.27. 박근혜 국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 주요 내용 : 첫째 경제 활성화법 처리 즉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서비스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 의료 지원법 처리, 둘째, 5대 노동 개혁법 처리, 셋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비준 촉구

○ 2015.10.27. 시정연설과 같은 날, 재단법인 미르 현판제막식 거행, 전경련 홍보

○ 2015.11.10. 국무회의, 박근혜, 재차 노동개혁 5개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처리 촉구

○ 2015.11.19. 전경련 회장단과 황교안 국무총리 만찬

- ‘이번 국회 회기 내에 경제 활성화 법안, 노동 개혁 5대 법안, 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달라’(대통령 시정연설문과 순서까지 동일함)

○ 2015.12.24.부터 2016.1.12.까지 입금완료, K스포츠재단

○ 2016.1.13. 박근혜 대국민 담화문 발표

- 첫째, 노동 개혁법 처리, 둘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 및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처리. (이 둘은 같은 주문인데 작년 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국제 의료 지원법이 통과되고 한중 FTA도 비준되었기 때문에 제외됨)

○ 2016.1.13. 전경련, 대한상의 등 38개 경제단체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국민운동 추진본부’ 결성, 서비스발전법, 노동개혁법 처리하라는 서명운동

○ 2016.1.18. 박근혜 예정에 없이 판교역 행사장에 도착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영접을 받으며 서명을 함

○ 2016.1.22.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정부세종청사에서 쉬운해고, 취업규칙 변경완
화 2대 지침 전격 발표

다.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

전경련은 이승철 부회장의 지휘 아래 직접 재벌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약정받았다. 그 결과 미르재단은 2015.10.27. 설립허가를 받은 지 단 2개월 만에 486억원을 (2015년 12월 기준), K스포츠재단은 2016.1.13. 설립허가를 받은 지 단 약 7개월만에 288억원을(2016년 8월 기준) 각기 모았다.

※ 대기업들은 왜 신생재단 2곳에 774억을 냈나, 조선닷컴, 2016.9.23.

두 재단 모두 짧은 기간(미르재단 약 2개월, K스포츠재단 약 7개월) 동안 774억 원을 출연받았다. 미르재단이 모은 486억 원은 2015년 대한적십자사가 받은 기부금보다 많은 돈이고, 문화분야에서 독보적인 모금액에 해당한다.³⁾

전경련은 2016.10.25. 대기업에 긴급협조공문을 보내, ‘미르재단 설립을 위해 반드시 내일 팔래스 호텔 모임에 참석하라’고 전달했고, 대기업 담당자들은 다음 날인 10. 26. 서울 팰래스 호텔에 모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였다.

3) 심지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회사들은 정작 자신들이 기부를 약속한 공익재단에는 기부를 하지 않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등은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에 550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하였지만 실제로는 2.9%인 16억 원만 냈다.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은 입찰 담합 사실이 적발돼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됐던 74개 건설업체가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제재 조치를 감면받은 뒤 8월19일 대한건설협회 주도로 ‘자정결의및사회공헌사업선포식’을 열고 같은 해 12월 설립한 기금 규모 2천억 원의 공익재단인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까지 독촉을 해도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은 유독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수십억 원’을 납부하였다. ※ [단독] 미르.K에 ‘쾌척’ 건설업체들, 자기 재단엔 약속한 돈 3%도 안 냈다, 한겨레, 2016.9.24.

앞서 본바 같은 문체부의 설립 허가 처리과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자와 주무 부처가 얼마나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준다. 이후 전경련은 미르재단 설립허가가 결재된 지 2시간도 안 되어 미르재단 발족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전경련은 미르재단 설립허가가 27일 당일 날 것을 알았다는 듯이 당일 오후 2시에 전경련은 현판식을 개최하였던 것이다.

결국 자신들이 약속한 다른 기부금은 내지도 않는 재벌기업들은 전경련 이승철을 통하여 급조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는 수억, 수십억 원의 기부금을 냈다. 이러한 정황과 박근혜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은 문화융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종의 대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 넉넉히 추단된다.

라. 전경련을 통한 부정한 청탁의 구체적 내용

(1) 부정한 청탁의 의미

제3자 뇌물제공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되고,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4.14.선고 2010도12313 판결).

(2) 전경련의 지속적 민원 제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모금’ 이 이루어졌던 2015년도 하반기 무렵, 전경련은 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특히 전경련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노동개혁 5법,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

었다.

이 중 전경련이 요구하고 청와대가 부응한 ‘노동정책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일반해고 등의 노동법 개정

‘노동개혁 5대 법안’이란 정부가 추진하는 총 다섯 개의 법안을 합쳐서 일컫는 말로써,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이 해당한다. 전경련 등 경제 5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쉬운 해고를 위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지침이 아니라 법으로 못 박으라고 요구하였다.⁴⁾

또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정규직마저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다. 즉 전경련이 요구하는 노동개혁 5법은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의 통제력과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 보호 입법”이었다.

전경련이 요구하는 노동법 개정안들은 모두 사용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조정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거나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면서 강행 처리하고자 하였다.

(4) 성과연봉제 도입 등 행정지침 강제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노동개혁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국회 내에서 근

4)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저성과자로 분류하여 해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서 소위 ‘값싸고 손 쉬운 해고’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었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기준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동의 없이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로기준법·과건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개정이 어려워지자 행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2015년 9월 15일 노사정 합의 후 구성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정부는 2대 지침(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과 취업규칙 지침)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도입을 요구였다.

이후 미르재단 모금이 마무리된 10월 26일 직후인 진용섭 금융감독원장이 10월 27일 10개 시중은행장들에게 은행권 성과주의 확산 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11월 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돌연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금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장하고, 같은 날 이날 서울 명동 YWCA에서 열린 ‘은행의 바람직한 성과주의 확산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다.

그 후 정부는 수 차례 “2대 지침에 관해 9.15. 노사정합의 정신에 따라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히 협의한다(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개선정책관, 2016.1.7.)”라고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2016년 1월 22일“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공정인사 지침”⁵⁾과 “취업규칙 지침”⁶⁾을 확정하고 최종 발표하였다. 당시 이러한 지침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물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도하여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2대 지침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물론 노사정 합의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조차 반대하는 내용으로서, 이를 계기로 한국노총은 2015년 9월 15일자 노사정

5)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이 지침은 “공정한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급여·승진 등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6) “취업규칙 지침”은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는 경우,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할 수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합의 파기를 선언하였다.

이후 이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이 발표되었다. 위와 같은 논리에 근거하여 당시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용자가 노조와 합의없이 임금체계 개편(성과연봉제 도입)을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어 금융위원회(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는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을 2016년 2월 1일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기획재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 및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에 근거하여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금융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의도로써, 보수·평가교육·인사영업방식 등 전 부문에 대해 『성과중심 문화』의 확산을 추진하여 “일반 은행 등 민간 금융권도 자율적인 노사협의를 통하여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하는 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6년 2월 25일 기획재정부는 유일호 장관(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방안 등을 발표하였으며, 이어 2월28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도입을 강권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스스로 공정인사 지침과 연계하였음을 인정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권고안’을 마련하여 3월 18일에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시 “노동개혁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추진에 나섰다.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적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제로 개편해 나간다”,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관리 전반에 공정인사를 확산해 나간다”는 내용의 핵심과제를 3월 21일 발표하여, 공공기관 및 금융

기관 성과연봉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 것은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 기획재정부 유일호 장관(경제부총리),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이었다. 그리고 2015년 노사정위원회 합의 및 그 이후 2대 지침을 준비하는 2015년말 당시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를 총괄하던 경제부총리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이들 정책을 직접 총괄 지휘하였다. 따라서 이들 4명의 장관·부총리는 노동개혁 정책이 2대 지침 및 성과연봉제 지침 등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핵심 인물이라고 할 것이다.

마. 전경련의 청탁과 각 재단 출연금 납부의 관계

박근혜 대통령과 안중범 수석이 대기업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을 독려 하던 시기와 맞물려 전경련은 적극적으로 노동개혁 정책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장 하였다.

같은 시기 기획재정부(당시 최경환 장관), 고용노동부(이기권 장관), 금융위원회(임종룡 위원장) 등은 일제히 노동개혁 정책과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 정책 도입을 추진했다.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제도는 12월 초에 발표되는 익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 다루어지거나, 혹은 1월 첫 주에 발표되는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성과연봉제 정책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책 결정 일정과 무관하게 추진된 것으로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기업의 출연과 깊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도 하반기 재벌기업들은 노동자서민들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만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결정·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합리적 토론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통해 일방적이고 신속

하게 정책이 정해지도록 도모하였다. 정부는 이에 부응하여 재벌기업들을 위한 정책을 밀어붙였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노동자들의 반대 및 파업을 불온한 것으로 매도하거나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여 탄압하는 것은 재벌기업들의 요구에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정부의 공무집행은 공정성을 상실하였고, 사회는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

바. 소결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정부의 노동5법 개악시도, 공정인사 지침, 취업규칙 지침, 성과연봉제 등의 정책 추진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기금 출연을 주도한 전경련, 그리고 실제로 자금을 출연한 재벌 총수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0월 안중범 수석으로부터 출연금 진행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두 재단의 출연금 규모를 각각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려 모두 1,000억원으로 하도록 하고, 출연하는 기업들도 10대 그룹에만 한정하지 말고 30대 그룹으로 넓히도록 지시하였다. 2015. 10. 25. 미르재단에 대한 입금이 완료된 이후, 10월 27일 대통령 박근혜는 국회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 활성화법 처리, 즉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처리와 5대 노동악법 처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재단법인 미르 현판제막식이 거행되었다.

2016. 1. 12. K스포츠재단 입금이 완료된 후 다음날인 1. 13.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

리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호소하면서 또 다시 국회에 노동악법 처리,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 및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처리를 주문하였다(2015년 10월 시정연설에서 나온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한중 FTA는 통과 내지 비준되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같은 날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소위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였고, 1. 18. 대통령 박근혜는 직접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서명을 하는 진풍경까지 연출하였던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고용노동부는 2016. 1. 22. 쉬운해고, 취업규칙 변경완화 2대 행정지침을 전격 발표하며 노사자율을 침해하고 노동현장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

이상과 같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모금 완료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여 정책 추진이 언급되고 곧바로 실무준비를 통해 시행이 반복적으로 교차하고 있다.

전경련은 재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안중범, 이승철, 최순실 등의 공모에 의하여 설립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뇌물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경련은 각종 친재벌적 노동정책들이 원활하게 국가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촉진하려는 목적 아래 앞장서서 뇌물을 바친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권력을 특정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토록 권력과 유착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아 온 전경련은 뿌리 뽑아야 할 정경유착의 온상으로서 하루빨리 해체되어야 한다. 끝.

발제문2.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 제고 방안

- 김남근 변호사 (민변 부회장)

범죄수익환수의 실효성 제고 방안

2017. 1. 17.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I. 들어가며 : 한국의 범죄수익 환수상황

법무부가 2015년 국회에 제출한 “추징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추징금 대상은 25만783건, 25조6,259억원 가량인데 이중 2만 2,485건, 25조5,538 억원이 미환수되어 미환수율이 금액기준으로는 무려 99.72%에 달한다. 환수불능으로 처리되는 건수도 계속 늘어나 1만1,246건 3,5953억이 불능처리 되었다. 검찰에 대해 전두환 추징 때처럼 한번 보여주기 식 집행이 아니라, 상시적인 철저한 추징 집행을 할 것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부정하게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부정재산이 3,000억원이 넘고 독일 등 해외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민병두, 채이배 두 의원이 이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한편 이러한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는 여러차례 있었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야기했던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에 대한 형사소추를 추진하면서 범죄수익을 환수하여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보상기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기소전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통해 유병언 일가의 재산 약 1,054억원원을 동결하였었다. 그러나 유병언이 사망하여 형사소추를 하지 못하게 되어 보전한 금원을 추징하지 못하였고, 이때도 “유병언 특별법”이라고 하는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논의가 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한 범죄재산을 계속 환수하기 위해 소위 “전두환 특별법” 논의가 있었고 범죄수익은닉죄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는 재벌총수일가의 불법형성 이득 환수를 위한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재벌그룹 내 대기업에서 재벌총수의 지위를 상속하기 위해 배임죄 등의 범죄를 감행하면서까지 이루어진 편법상속은 사실상 범죄수익에 해당하나 이러한 범죄수익도 그 당시 범죄수익을 취득한 총수일가 상속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형사처벌의 부가형으로 운용되는 추징 제도로는 환수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엄청난 범죄수익이 발생하였으나 그 범죄수

익을 환수하지 못하여 사회적 비난여론이 발생할 때마다 가칭 “전두환 특별법”, “이학수 특별법”, “유병언 특별법” 등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새로운 특별법 제정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범죄자와 관련자의 국내외 금융·부동산 파악이 쉽지 않고 그 자녀 등 제3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취약하여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범죄수익을 환수하여 마약 등 강력범죄의 확산을 차단하고 부패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UN 부패방지협약 등 국제기구에서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범죄수익환수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1995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1995년)”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 범죄수익환수제도를 도입하다가, 2001년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2001)”을 제정하였으나, 여전히 범죄재산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그 정을 알고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고, 범죄자가 도주, 사망,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어 위와 같이 좀 더 종합적인 범죄수익 환수제도 개혁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아직 이러한 국제적 수준에 맞는 제대로 된 범죄수익 환수제도는 입법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기구들이 권고하고 있는 민사몰수제도를 중심으로 새로 도입해야 할 범죄수익환수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재벌총수일가의 불법형성 이득의 환수 필요성

1. 삼성 이건희-이재용 편법상속 과정에서 취득한 불법이득

(1) 삼성 SDS의 BW 헐값 발행 등 배임죄 판결이 있었던 불법이득

1999년 삼성 SDS는 그룹회장 이건희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에서 당시 불과 31세이었던 이재용 남매와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김인주 사장에게 230억원의 삼성 SDS 신수인수권부 사채(BW)를 제3자 배정형식으로 발행하였다. BW 행사가격은 7,150원이었으나 당시 장외시장 주식거래가격은 5만원으로 당연히 배임죄 논란이 발생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2009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은

삼성 SDS BW 헐값 발행에 대해 이건희, 이학수, 김인주 3인에게 배임죄 유죄를 인정하고 이재용 남매에게는 무죄를 확정하였다. 그 뒤 삼성그룹은 삼성 SDS에 집중적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한 결과(매출액의 60%가 그룹 계열사의 일감) 그 주식 가치가 급상승하였고, 2014년 11월 14일 삼성 SDS 상장 시에 위 3인이 받은 주식 가치 230억 원은 250배가 증가하여 5조5,827억 원이 되었다(이재용 남매가 4조 4,325억원). 이건희 회장은 삼성 SDS의 손해에 대해 200억원의 손해배상을 하였고, 이재용 남매는 400억원의 증여세를 부담하였지만, 재벌총수의 지시에 의한 범죄행위를 통한 증여로 얻은 수조원의 범죄수익에 비하여 재벌총수일가가 회사에 배상한 손해액이나 국가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너무 왜소하다. 삼성 SDS 상장 시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수 사장이 얻는 지분가치도 1조2,235억원과 5,262억원으로 위와 같은 재벌총수의 범죄행위에 협력한 결과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얻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조원의 수익을 통해 삼성그룹을 승계할 실탄을 마련하였다.

(2) 삼성 SDS 사건 이외 취득한 불법이득

삼성 SDS 이외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비상장 계열사의 전환사채(CB) 헐값 발행과 그 후 상장이란 방식을 통해 수조원의 재산을 불려왔다. 1995년 말 삼성에스원의 주식 23억원에 인수하였는데, 바로 직후 1996년 1월 30일 상장되고 6개월 후 주당 30만원으로 주가가 상승한 후 주식을 전량 매각하여 375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같은 시기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47만주를 주당 5,000원 19억 원에 매입하여 상장 후 주당 5만9,000원에 매각하여 210억 원 시세차익을 얻었다. 1996년 중앙개발의 지분 63.5%에 해당하는 CB를 96억 원에 헐값인수 후 2000년 전량 주식전환 하였고, 그 뒤 중앙개발이 삼성에버랜드⁷⁾로 변경된 후 2014년 12월 18일 상장되면서 지분가치는 3조5,477억원이 되었다(최초 96억 원과 비교하면...). 1997년 삼성전자가 CB 600억 원을 발행하였는데, 그 중 450억 원 CB를 이재용이 인수 전환사채 발행 무효소송과 처분금지처분 판결 하루 전 주식으로 전환하여 그 뒤 250억 원의 차익을 실현하였다. 1998년 제일기획의 CB를 주당 1만원에 18억원에 구입한 후 제일기획 상장 직전 주식으로 전환하여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 외에도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공익재단에 그룹 계열사 주식을 출연한 후

7) 삼성에버랜드는 그 뒤 제일모직과 합병되어 제일모직이 되었다가, 2015년 7월 다시 삼성물산과 합병되어 삼성물산이 되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 국민연금은 적정 합병비율이 1 : 0.42로 분석하였음에도 1 : 0.35의 합병비율에 찬성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시 미르재단에 출연하는 대가로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익재단을 통한 계열사 지배와 이재용 부회장 상속 과정에서 출연주식을 매각하여 이재용 부회장 계열사 지배과정에 필요한 주식의 매입에 사용하는 등 공익재단을 통한 사실상의 상속의 편법도 동원하였다.

(3) 주식 불법취득 후 일감몰아주기로 붙어난 파생수익(유래재산과 혼화⁸⁾재산)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제2조 제3호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임죄로 취득한 재산인 주식이 상장된 후 그 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수익도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한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은 위와 같은 삼성 SDS와 그 밖에 삼성그룹 비상장 계열사의 CB나 BW를 헐값으로 인수한 후, 삼성그룹이 해당 비상장 계열사에 집중적인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주식가치를 올려 주식상장을 하면 그 시세차익을 남기거나 주식지분의 가치를 올리는 방식으로 2015년 현재 8조 2,500억원의 재산을 모아 세계 200대 억만장자 중 183위의 억만장자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고, 삼성그룹 상장계열사 시가총액 합계 330조6,693억원의 실질적인 CEO의 지위를 상속받게 되었다. 이러한 10여년에 걸친 증여·상속 과정에서 수많은 배임죄 논란과 증여세 부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검찰이 배임죄로 기소한 것은 삼성에버랜드(전 중앙개발) CB발행과 삼성 SDS의 BW발행 2건이었고, 그 중 삼성에버랜드 CB 발행은 최종 무죄판결이 내려지고, 삼성 SDS BW건에 대해서만 최종 배임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8조원의 수익을 올린 이재용 부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400억원이 전부이고, 이러한 편법 증여·상속과 배임행위를 지휘한 이근희 회장이 회사에 배당한 금액은 200억원이 전부이다. 삼성그룹의 위와 같은 편법 상속과정은 우리 사회에 ‘유전무죄’라는 “법의 정의의 실종”을 경고하는 사례가 되었고, 재벌이 이제는 검찰과 사법부에 마저 영향을 미치며 국가의 권력의 사유화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2.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취득한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이득⁹⁾

8)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 조는 유래재산과 혼화재산 등 범죄의 대가로 얻은 재산이 파생하여 늘어난 파생수익에대해서도 유래재산 또는 혼화재산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9) 이하의 부분은 참여연대가 2017. 1. 5.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찬성과정의 뇌물죄 성립과 뇌물을 제공하고 얻는 범죄수익의 환수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의견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의 합병찬성 과정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이하 합병) 이전, 이재용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없는 상황에서 제일모직(주)의 최대주주였기 때문에,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유리한 상황이었다. 이에 당시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는 것이 이재용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였으며, 이를 위하여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인 홍완선을 합병 주주총회 직전에 직접 만났다. 국민연금의 경우, 당시 구 삼성물산 지분을 제일모직 지분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 삼성물산(주) 주주에게 불리한 합병에 반대해야하는 것이 합리적임. 합병 당시, 합병비율 등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은 이재용과 정반대의 이해관계에 위치하였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개최 요구와 합병 반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하였다.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이 없었더라면 합병은 성사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합병이 이재용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행동했다. 이재용 등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역할이 필요했고 실제로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장과 만나는 등 국민연금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로비를 펼친 정황이 확인되었다. 2015.7. 17.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승인되고, 같은 날, 최순실과 정유라가 주주로 '코레스포츠' 유한회사를 설립하였다. 2015. 7. 25.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고, 7. 27.,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독일을 향해 출국함. 약 1개월 후에 삼성과 최순실측 코레스포츠는 220억원 규모의 지원계약 체결하였다. 2015. 9.경 삼성이 최순실의 코레스포츠로 35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5. 10. 26. 삼성계열사들 미르재단에 125억 원을 입금하였으며, 2016. 1. 12. 삼성계열사들 케이스포츠재단에 79억 원 입금을 완료하였다.

(2)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증뢰죄 성립여부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133조는 이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뇌물공여죄를 처벌하고 있다.

이재용은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를 이용하여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일가 등에 약 3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입금하였다¹⁰⁾.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가로 본인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안중범 전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기금이사로서 하여금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결정을 하도록 하였다. 즉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대통령에게 30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병 이후 법인에서 지분을 확대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가 된다. 이에 의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형법 제133조, 제129조에 위반하여, 대통령의 사자 또는 대리인이거나,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만일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최순실이 뇌물을 수령한 것이 피고박근혜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수수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 승인에 협력해 줄 것을 피의자 박근혜에게 부탁하였다는 점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뇌물을 제공한 피의자 이재용은 형법 제133조, 제130조 제3자 뇌물공여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10) 서울신문 “삼성, 최순실에 43억 추가 지원 확인”... 檢, 대가성 여부 추적“(2016. 11. 27.자 보도). 삼성전자 독일 법인에 말 구입비 명목으로 43억 원 지원+최순실 독일회사 비데스포르츠에 37억 원 입금+미르재단에 125억 원 후원+K스포츠재단에 79억 원 후원+장시호의 한국동계스포츠연재센터에 16억 원 후원 = 총 300억 원

(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불법이득의 규모¹¹⁾

합병비율로 구 삼성물산 0.35, 제일모직 1을 적용한 합병으로 인해 이재용 등 총 수일가는 현 삼성물산의 지분 30.42%(577,008,159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국민연금공단의 투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내부에서 적절한 합병비율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사이에 1:0.46으로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²⁾. 그러나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의 이 사건 합병 당시 가치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로는 (구)삼성물산의 1주당 가치는 제일모직의 1주당 가치를 뛰어넘는 것으로 볼 근거가 상당하며,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 ISS는 적정 합병비율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의 비율을 1:1.21까지도 평가하기도 했다.

<표 1>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내재가치 계산¹³⁾

구분	(구)삼성물산		제일모직	
비영업 가치	삼성전자	8.6조	삼성생명	3.7조
	삼성SDS	3.5조	삼성바이오	4.3조
	기타	2.8조	기타	-
	소계	14.9조	소계	8.0조
영업가치	건설/상사	6.5조	패션/건설/레저/ 급식	6.4조
총 기업가치		21.4조		14.4조
순차입금		3.5조		1.4조
자기자본 가치		17.9조		13.0조
주식수	우선주반영	159,119,453	총 발행주식수	135,000,000
주당가치		112,372원		96,790원

합병 이후 재상장일(2015년 9월 15일)을 기준으로 합병 이후 전체적인 주가 하락

11) 이하 평가방법은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2016. 12. 1. 개최)'에서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의 발제문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문제점'을 인용하였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62870>

12) (000 리서치 팀장) 우리가 산출한 양사의 적정가치에 기초하여 합병비율을 구해보면 1:0.46이며, 따라서 합병비율에 있어서는 삼성물산이 다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음

13) <표 1>은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내재가치를 계산해 본 결과이다. M&A를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석틀을 사용했다. 즉, 회사의 자산을 영업자산(매출채권, 매입채무 등), 비영업자산(주식), 순차입금(현금, 단기금융상품, 차입금)으로 구분하여, 영업자산은 EBIT 또는 EBITDA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비영업자산과 순차입금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이다. (홍순탁,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문제점',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토론회(2016. 12. 1.) 자료집 p.17)

으로 인한 손실을 제거하고, 합병이 성사되면 통합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은 주식수와 무관하다고 가정해서 이를 표시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아래 계산에 따라 이재용 일가의 이익과 국민연금공단의 손실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손실액수는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신주 교부시점에서 보유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¹⁴⁾.

<그림 1> 합병비율에 따른 이재용 일가의 이득액 계산내역



이를 보면, 국민연금이 내부적으로 정한 합병비율에 의할 경우 이재용 일가는 7,445억 원의 이익을 취하게 되고, 합병비율을 1대 1로 볼 경우, 이재용 일가는 3조 1,271억 원의 이익을 취하게 된다. 또한 이 사건 합병 당시 의결권자문기구인 ISS가 산정한 합병비율 1:1.21을 적용하는 경우 이재용 일가의 이득액은 3조 7,187억 원 이르게 된다고 분석된다. 결국 적정한 합병비율이라 할 수 있는 1대1 비율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피의자 이재용 일가는 3조 1,271억 원의 이익을 얻은 바, 이는 뇌물공여행위라는 중대범죄에 의하여 재산으로써 전액 몰수 또는 추정되어야 할 것이다.

14) 전자공시시스템 '삼성물산 주식대량보유보고서(약식)'(2015.10.6.)

<표 2> 합병비율 변동에 따른 이해득실

구 분	0.46 (국민연금공단)	1대1	1대1.21 (ISS 최종)
이재용 일가 이득	7,445억원	3조 1,271억원	3조 7,187억원
국민연금공단 손실	1,233억원	5,178억원	6,157억원

3.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제공하고 얻은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가능성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결의 통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몰수되어야 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중대범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가 정하고 있는데, 별표 제1.호 (가)목은 ‘형법 제2편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를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이재용은 제133조, 제129조 또는 제130조로 처벌되어야 하므로, 동법이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범죄수익의 개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6호], 제2호 (가)목, 제8조, 제10조에서 몰수 또는 추징 대상으로 정한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불법수익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의미를 ① 범죄행위와 관련된 이익으로서(범죄행위와의 관련성) ②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범죄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삼성” 게이트의 내용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은 중대범죄인 뇌물공여에 의하여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서 찬성하도록 하였던바, 그 결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뇌물죄를 저지르게 된 직접적인 경제적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뇌물공여와 관련된 이익이라 볼 수 있다(범죄행위와의 관련성 충족). 그 이익은 뇌물공여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이고, 뇌물공여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것이므로 뇌물공여행위와 이재용이 합병을 통해 취득한 이익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범죄행위와의 인과관계 충족). 그렇다면, 피의자 이재용이 이 사건 합병으로 취득한 이익은 뇌물공여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뇌물공여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보아 몰수되어야 한다. 동법 제10조는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징을 할 수 있다. 만일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얻은 이익이 몰수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면, 그 이득액 상당을 추징하여야 한다.

4. 재벌의 불법상속 수익의 환수제도 논의

위와 같은 재벌의 불법·편법 재벌상속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는 1)재벌그룹 계열사의 CB할값 인수 간주모집 제도의 개선과 증여세의 포괄주의, 2)재벌공익재단 출연 재산 매각 시 증여세 부과와 재벌공익재단의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3)재벌총수일가 지배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제한과 증여세 부과, 4)재벌총수일가가 얻은 범죄수익의 환수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1)의 “간주모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50인 미만을 대상으로 신주 발행한 이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사실상 공모로 분류되어 신주가 시가보다 낮게 발행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인데, 재벌들의 상속에 교묘히 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2)는 삼성생명공익재단 등 재벌그룹 공익재단이 사실상 계열사 지배에 활용되고, 이재용 승계과정에서 보이듯이 필요하면 보유주식을 팔고 지배구조 상위의 계열사의 주식을 매입하는데도 사용되는 등 공익재단 이사장인 재벌총수 1인의 재벌그룹 지배에 사실상 이용되고 있어, 출연재산의 처분 시 증여세를 명확하게 부과하고 보유주식을 계열사 지배에 행사하지 못하도록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3)

은 삼성그룹만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그룹, 한진그룹 등 대부분의 그룹에서 주력 재벌기업에서 얻은 이익을 광고, 물류, 건설, 인력공급 업체 등 총수일가 개인들이 많은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비싼 가격 내지싼 비용으로 일감을 몰아주어 총수일가 개인들이 주력 재벌기업에서 얻은 이익을 개인적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재벌 시스템에서 재벌그룹의 이익이 총수일가 개인들에게 사적으로 전취되지 못하도록 막고 사후적으로 증여세로 그 이익을 환수하자는 취지이다.

4)는 이재용 부회장과 같이 편법상속을 위해 이사회 결의 등을 한 이사들은 배임죄 등으로 처벌받지만 그 상속인인 재벌 2,3세들은 그 범죄수익을 편취할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형사범죄의 부가형 형태로 된 몰수나 추징이 적용되지 않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UN부패기구와 EU 등에서 각국에 범죄수익 환수제도로 권고하고 있는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하여 범죄자가 아닌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Ⅲ. 국제공조로 도입이 권고되고 있는 범죄수익환수제도

1.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국제협약

자금세탁을 억제하고 이에 대한 국제협력 체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1989년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Finacial Action Task Force)이 설립되었다. 한국은 1998년 12월 28일 비엔나 협약에 가입하였는데, 비엔나 협약은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방지 협약”으로 영리목적의 마약류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마약류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수익을 추적·환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외국에 있는 재산의 몰수·환수 재판의 집행을 위한 국제 공조 절차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3년 UN부패방지협약(UNCAC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은 제54조 제1항 C호에서 “사망, 도주 또는 부재를 이유로 기소될 수 없거나 그 밖의 다른 적절한 경우 유죄판결 없이도 관련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민사몰수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FATF도 2003년 개정 권고안 제3항에서 민사몰수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2012년 권고안에서는 민사몰수제도의 도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선진각국의 민사몰수제도 도입 현황

1) 영국은 이미 2002년 형사절차법 개정(Proceedes of Crime Act 2002)에서 제5장에 민사몰수(Civil Forfeiture)를 확대한 민사환수(Civil Recovery)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연영방 국가들은 영국식의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하였다.

2) 미국은 보통법(Common Law)에 기초하여 형사몰수제도 외에도 민사몰수, 행정몰수 등 다양한 몰수·추징 제도를 운영하여 범죄수익의 환수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 범죄수익환수제도의 주요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3) 독일은 물건에 대한 몰수와 이익박탈 제도로 구분하고, 박탈과 몰수를 형법에 일원화하여 규정하면서 보상규정을 형법에 두고 보전절차 등은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다.

3. 범죄수익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제도

1) 몰수·추징 대상의 확대

법무부의 형법개정안에도 범죄의 대가로 받은 재산도 몰수·추징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2) 의제신탁의 법리

범죄자로부터 정당한 대가 없이 제3자가 취득한 재산은 범죄자로부터 불법재산을 신탁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그 불법재산으로부터 파생한 유래재산, 혼화재산(제3자의 다른 재산과 혼합된 것. 그 중 범죄재산으로부터 유래된 것만 추징)까지 신탁재산으로 보아 전부 환수한다.

3) 입증책임의 분담

검사가 범죄자로부터 정당한 대가 없이(대부분 자녀에 대한 증여 등) 제3자가 범죄로 인한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취득한 자가 그러한 정을 모르고 취

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한다.

4) 대체벌금 제도

몰수대상물이 어떤 사유로 인해 가치가 감소하거나 가치가 없게 된다면 몰수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캐나다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체 벌금 제도를 들 수 있음. 이에 따르면 몰수대상 재산의 일부나 전부, 그 이익이 ①소재 파악이 안될 때, ② 제3자에게 이전 된 때, ③ 국외에 소재하고 있을 때, ④ 실질적 가치가 감소 내지 무가치하게 된 때, ⑤ 다른 재산과 혼동되어 불가분이 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주형에 부과하여 금액에 따라 구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민사몰수 제도

기존의 형사몰수의 한계로 인해 형사몰수의 대안으로 민사몰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이행사례가 중요하므로, 이하에서는 민사몰수제도의 모태국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민사몰수제도를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4. “최순실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등의 취지

최근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소위 “최순실 특별법”은 권력을 이용한 국헌문란행위 또는 국정문란행위를 정의하고, 이러한 행위 등을 통해 취득한 부정한 수익 등의 몰수·추징에 관한 절차의 규정을 통해, 정의 실현과, 정경유착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헌법의 이념을 구현함을 그 취지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국헌문란 행위, 국정문란행위로 규정. ② 몰수·추징의 부가형 성격의 예외 규정. ③ 위 행위들과 관련하여 부정수익을 몰수할 경우 특별법 지위의 성격 규정. ④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 ⑤ 선의 소유자 권리 침해 보호 규정. ⑥ 누구든지 몰수 청구 신청할 자격의 부여 규정. ⑦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규정. ⑧ 피해자 구제기금 설치 규정. ⑨ 부칙으로 소급 적용 규정. 등을 두고 있다.

Ⅲ. 민수몰수특례법(영국의 민사몰수제도를 중심으로)¹⁵⁾

1 민사환수의 집행기관

영국의 범죄수익규제법은 제1장에 중앙정부의 몰수전담기구인 ‘자산회수청’(Assets Recovery Agency)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자산회수청은 범죄수익수사, 일반적 형사, 민사 몰수 업무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었다. 현재는 2013. 10. 신설된 ‘국립범죄청’(NCA:National Crime Agency)이 자산회수청의 기능과 권한을 수행하고 있다. 민사환수업무의 전속권은 자산회수청장만이 가지고 있었는데, 법 개정을 통하여 현재는 국립범죄청장 등 여러 법집행기관이 민사환수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나. 법원관할과 민사환수수사

영국의 범죄수익규제법 제240조는 민사환수 객체를 대상으로 관할권을 나누고 있는데 현금에 대한 몰수는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court)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현금 이외의 범죄수익에 대한 민사환수는 고등법원내 행정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국립범죄청장은 범죄수익규제법에 의거하여 민사환수를 위한 예비단계로 범죄수익금의 위치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민사환수수사를 진행할 수 있음. 민사환수수사의 방법으로 압수수색영장까지도 발부 받을 수 있는 등 강제수사의 권한까지 부여되어 있다.

다. 민사환수명령 절차

1) 임시관리명령¹⁶⁾

국립범죄청장은 먼저 범죄수익과 관련된 재산에 대하여 민사환수수사 후 고등법원내 행정법원에 범죄수익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임시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시관리 명령은 범죄수익 재산에 대한 유치, 보관 또는 보존을 위한 명령을 말한다. 임시관리 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 재산에는 ‘관련재산’도 포함되는데, 여기서 ‘관련재산’은 예컨대 범죄수익이 재투자되어 발생한 임차권이나 은행이자 또는

15) 김학경, “ ”

16) 우리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기소전 추정 보전제도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불법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해진 재산 즉 혼합재산 등을 의미한다.

2) 민사환수명령

고등법원은 범죄수익 재산이 ‘환수가능자산’이라고 판단되면 반드시 ‘(민사)환수명령’을 내려야 한다. 다만 동조 제4항에 취득당시 몰수대상재산임을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선의의 소유자를 보호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환수명령을 위해 국립법청장이 ‘신탁관리자’를 ‘지명’하고, 고등법원이 최종 동지명된 자를 신탁관리자로 ‘지정’함. 민사환수명령으로 ‘환수가능자산’의 관리 및 처분권은 신탁관리자에게 귀속되며, 이에 따라 재산에 대한 ‘유치’, ‘보관’, 또는 ‘보존’의 임무를 수행하여 수익재산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하여 현금화 하는 것이다.

민사환수 명령에서 특이한 점은 동법 제276조에 의거 ‘동의명령’(Consent Order)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동의명령’제도는 민사환수명령의 대상자들이 환수절차조건에 대하여 서로 동의하면 고등법원이 그러한 조건을 존중하여 민사환수절차를 진행시키겠다는 명령을 의미한다. 이는 신탁관리자와 범죄수익 재산의 소유자 및 상소자 등 환수명령 대상자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대상자 및 법원 간의 동의(합의)를 근거로 하므로 민사환수절차에 대한 수용성, 신속성,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3) 동결명령

동결명령이란 민사환수수사 후 임시관리명령을 받기 전에 대상자가 불법수익 등을 미리 처분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전보전절차의 일종이다. 동결명령은 민사환수수사를 통하여 범죄수익 자산 위치나 금액 등이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한 민사환수가 용의하도록 법원의 허가 없이 범죄수익 자산 등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소극적 명령으로, 집행기관은 고등법원에 동결명령을 청구 할 수 있다.

라. 현금몰수

1) 수색 및 압수

국립범죄청장 및 수사관 역시 현금에 대한 수색 및 압수가 가능함. 수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치안판사’(a Justice of the Peace)가 발부한 영장 또는 경위급 이상의 경찰관이나 세관공무원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나, 긴급한 상황의 경우 영장 또는 사전승인 없이도 예외적으로 수색이 가능하다. 반면 이러한 예외적인 수색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장 없이 수색을 한 사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2) 유치 및 몰수

압수된 현금에 대하여 위법행위로 획득된 ‘환수가능자산’이거나 또는 위법행위에 사용될 예정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최초 48시간의 유치가 가능하다. 최초 48시간 이후에는 ‘치안판사법원’의 6개월 한도의 ‘유치명령’에 의해서만 계속 유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치명령은 2년까지 연장가능하다.

3) 유치현금수사

유치된 현금에 대한 몰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7년 ‘유치현금수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압수된 현금에 대하여 ‘몰수명령’을 받으려면 위법행위로 획득한 ‘환수가능자산’ 또는 위법행위에 사용될 예정이라는 우월한 증거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해주는 수사가 유치현금 수사이다.

V. 마치며 : 민사몰수제도 도입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의 해소

1. 소급입법 금지의 위헌쟁점

(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구별

진정소급입법이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을 하여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입법으로 원칙적으로 헌법 제13조의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나, 예외적으로 구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거나 지극히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여 예외적으로 구법에 의한 법적 상태의 존속을

요구하는 국민의 신뢰보호이익에 비하여 현저히 우선하는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6. 2. 16. 96헌가2, 1998. 9. 30. 97헌바38). 한편 부진정소급입법이란 과거에 이미 개시되었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와 그 법적 효과에 장래적으로 개입하여 법적 지위를 사후에 침해하는 입법을 말한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과 달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당사자의 신뢰보호에 의하여 입법형성권이 제한된다(2003. 9. 25. 2001헌마194). 신뢰보호원칙의 위배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대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1995. 6. 29. 94헌마39, 2002. 8. 3. 2001헌마159).

(2) 부진정소급입법에서 위헌심사의 쟁점 : 신뢰보호의 원칙

이 입법의 쟁점은 진정소급입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루어진 충실의무에 위배되는 이사의 배임행위 및 이사와 공모한 제3자의 배임적 행위결과의 법적효과로서 얻어진 이익에 대하여 장래적으로 개입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의 범위를 넘어 이익의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부진정소급입법에 관한 사안이다. 따라서 헌법 제13조 위반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현재의 법들을 통하여 형성된 신뢰보호를 위해 입법형성권이 제한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회사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회복조치(recover)에 관한 한국의 회사법 법리는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의 범위로 제한되므로, 그 뒤 그 얻은 이익인 주식의 상장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더라도 그 증가된 이익은 상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는 영미 등 서구유럽과의 법제와 비교해 보더라도 오히려 이례적인 것이고 과연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얻은 이익 중 회사가 그 배임행위 당시 입은 손해를 넘어 장래 얻어진 이익을 환수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만큼의 법익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3) 구법에 의하여 환수되지 않으리라는 신뢰는 헌법적 보호대상이 아님

구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이나 개발이익을 얻더라도 과세나 개발이익의 환수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적 보호받을 정도에 이르지 못한 기대에 불과하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들은 여러개가 있다. 헌법재판소 2003. 4. 24. 2002헌바9

결정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는 달성하고자 하는 과세의 형평 내지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이라는 공익은 청구인이 구 세법질서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신뢰에 비하여 훨씬 우월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구 세법이 그대로 유지되어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보호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희망 내지 기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2001. 2. 22. 98헌바19 결정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전에 착수하였지만 아직 개발을 완료하지 아니한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사업 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과 투입된 비용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그 일부는 불로소득적인 이익이므로 그 보호가치가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인구에 비하여 국토가 좁은 상황에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부담금제도의 공익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회사의 이사 개인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얻은 이익은 본래 그 이익의 귀속주체인 회사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세워야 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종전에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배임행위를 하여 얻은 이익 중 그 배임행위 당시 평가된 회사의 손해범위 안에서만 전보하면 되고 그 나머지의 이익을 개인이 전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보다 우월하고, 이러한 신뢰는 보호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희망 내지 기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친일재산 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심판 사건 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 결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송 사건에서 “친일재산의 귀속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와 같이 소급입법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

다. 친일재산의 취득 경우에 내포된 민족배반적 성격,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추어 친일반민족행위자측으로서는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친일재산 환수 문제는 그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므로 이러한 소급입법의 합헌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의 쟁점

일사부재리원칙은 형사소송법에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公訴)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민사몰수 청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형사재판으로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이중처벌이라 할 수 없다. 행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형사재판에서의 추징금 부과를 이중처벌이라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다만, 민사몰수특례법 운영 과정에서 이중처벌을 둘러싼 시비를 막기 위하여 형사몰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민사몰수절차를 중단하거나 배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3.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통한 피해보전 권리의 침해문제

국가가 민사몰수 절차를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면 피해자는 범죄자 또는 범죄자로부터 불법이득의 정을 알고 범죄수익 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를 회복할 재산이 없어지게 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범죄의 구체적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여 정보의 비대칭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오히려 국가가 정책적으로 민사몰수제도를 통해 환수한 재산을 피해보상 기금으로 조성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피해 변상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체계적인 범죄수익환수 제도의 발전 기대

형사정책적 측면에서도 범죄수익이 제대로 환수하지 않으면 엄한처벌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를 저지를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게 된다. 범죄수익의 환수는 우리 사회에 법의 정의가 살아 있고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본지표의 하나이다. 일제 강점기 국정을 농단하여 개인의 부를 축적하

있던 친일파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우리 시대에 뒤늦게나마 제정한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이미 형법 외에 5개의 범죄수익환수 특별법이 있는데, 또 다른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이번에는 말로 민사몰수제도를 포함하여 체계적인 범죄수익환수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몰수·추징 제도는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부가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 한계가 있다. 형사몰수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형사몰수제도 외에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 체계적인 민사몰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범죄수익몰수제도의 발전을 기대한다.

토론문

윤종오 국회의원

< 재벌총수 구속-전경련 해체 >

국회의원 윤종오

1. 뿌리깊은 정경유착의 역사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은 직접적으로 재벌을 육성하고 소위 '통치자금'으로 불리는 불법자금을 공공연하게 받아서 부정축재와 권력기반의 강화에 이용해왔다.

80년대 후반 재벌의 급속한 성장과 87년 민주항쟁을 거치며 90년대에 들어와 재벌은 정권과 맞먹는 수준의 사회정치적 힘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정주영회장의 대권도전처럼 직접적인 정치권력도전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차떼기 선거자금'처럼 선거시기에 집중지원을 통해 정권의 특혜를 받았다.

IMF이후 재편과정을 거친 재벌은 2000년대 들어 삼성, 현대차등 소수 재벌의 집중도가 현저하게 높아졌으며 이들은 더욱 강력한 사회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등 민주정부하에서 재벌은 막강한 사회정치적 힘과 신자유주의 세계화흐름을 활용하면서 정부에 대한 정책적 영향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켜나갔다.

2. 다시 확인된 정권과 자본의 민낯

우리 국민들은 한국사회에서 '정경유착'이라는 오랜 관행이 근절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노골적으로 재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노골적인 정경유착 방식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킨 자본은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함께 이명박 정부하에서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갔다.

이명박정권은 그 자신 재벌 경영인 출신으로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등 돈 되는 모든 곳에 개입하여 재벌과 연합하거나 독자적으로 천문학적 이권을 챙겼다.

박근혜정권은 그 자신이 보고 경험해온 대로 박정희식 방식처럼 재벌들에게 준조세를 거두고 이권을 챙기는 방식을 택했다.

다만 박근혜정권하에서 정경유착은 과거 박정희정권때처럼 정권의 일방적 우위가 아니라 상호 이권을 챙기는 '비즈니스' 방식으로 바뀌었다.

삼성, SK, 롯데의 사례처럼 재벌의 이권이나 약점을 이용하여 정권은 수백억원의 이권을 챙기고 재벌들은 총수 사면이나 사업상 수십배의 이익을 챙겼다.

박근혜정권과 재벌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인허가권만이 아니라 노동권의 무력화, 비정규직의 확산, 규제완화등 국민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조차 비즈니스방식으로 이권을 교환했다.

3. 범죄수익의 환수는 당연하다

박영수특검이 정권과 재벌의 유착관계를 파헤치기 위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의 본질에 다가섰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부회장(실제로는 회장)을 구속한다면 수십년간 이어져온 적폐를 청산하는 거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발제문에서 지적했듯이 국민연금이 부당한 비율에 따른 합병을 찬성함으로써 이재용 일가는 적게는 7천억원에서 많게는 3조 7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었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적게는 1천 2백억원에서 많게는 6천 1백억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삼성은 박근혜일당에게 300억원 내외의 뇌물을 제공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한 건으로 최대 120배의 이득을 챙긴 것이다. 반면 노동자, 서민의 노후생활자금인 국민연금은 심각한 손실을 보았다.

박근혜-최순실일당과 재벌의 불법행위가 밝혀진 이상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는 당연한 것이다.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각종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

촛불항쟁이 정권의 퇴진만이 아니라 적폐청산으로 이어지고 심화되어야 하는 이유다.

특검의 성과에 기초하여 박근혜정권하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만이 아니라 재벌의 상속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범죄수익환수를 추진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함께 국회는 삼성-현대특검법을 제정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4. 재벌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실규명으로 나아가야 한다

재벌의 불법행위와 권력의 비호는 사업상 이권을 챙기거나 친재벌정책에 대한 로비, 불법승계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내부고발자, 감시견제자는 노동조합이다. 그러하기에 재벌총수들은 예외없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아왔으며 아직도 이를 지키고 있는 재벌들도 있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재벌의 방침에 저항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가혹한 탄압을 벌여왔다.

가장 대표적인 재벌이 삼성이며 지금도 삼성은 삼성서비스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불법행위를 벌이고 있다.

재벌들의 무노조경영, 어용노조화는 재벌사업장에 국한되지 않고 계열사, 하청업체에 까지 확대되고 있다.

현대그룹은 협력업체의 강성노조가 안정적 생산기반의 구축과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고 체계적으로 협력업체 노동조합을 와해시켰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이며 갑을오토텍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유성기업은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현대차그룹본사와 유성관리자의 공모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단죄가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

5.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이후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라고 말했으며 실제 임기 동안 신자유주의 시장논리를 받아들여 비정규직 확산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재벌들이 승승장구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시장과 재벌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것은 아니다.

다만 권력을 담당한 정치세력이 자본과 시장에 굴복했을 뿐이다.

신자유주의의 본산인 미국에서조차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거대 자본에 대해 강력한 통제와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

트럼프식의 방식이 적절한지는 논란이 있지만 트럼프당선자는 포드와 지엠, 애플등의 미국거대기업과 토요타등 일본기업들에게 미국의 일자리창출, 유지를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실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촛불항쟁은 권력의 원천이 국민대중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특검의 수사는 권력자가 권력의 원천인 국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한국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정의로운 사회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초법적인 방식이 아니라 현재의 법테두리 안에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혁명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민주적 정권교체의 실현과 강력한 진보정당의 건설이 더욱 절박한 과제로 제기된다. 거대한 촛불항쟁에 힘입어 일시적인 특검의 방식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권하에서 재벌공화국 적폐청산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아름다운 과제를 재벌공화국의 한 축인 보수야당이 온전하게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대중이 중심이 되고 국민속에 깊이 뿌리박고 언제든지 제2, 제3의 촛불항쟁을 조직할 수 있는 진보정당 건설의 꿈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토론문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 글은 2015. 4. 23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 토론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재산범죄 환수의 유효성 제고 방안

2017. 1. 17.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목 차

- ◆ 문제의 제기: 재산범죄의 사회적 통제 강화 필요
- ◆ 재산범죄의 경제학적 비용
- ◆ 재산범죄에 대한 대응방식
- ◆ 주요국의 민사적 환수 절차
 - 영미권 국가
 - EU Directive
- ◆ 일사부재리 (Double jeopardy)
- ◆ 소급입법
- ◆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2

재산범죄 환수 사각지대 보도

한국경제

뉴스
증권
부동산
연예
포토
자동차
재테크
골프
DB언사이트
직장

홈 > 뉴스 > 경제기사
📄 - + 📄

추가조작·횡령 '범죄 수익' 환수 사실상 全無

입력 2010-11-17 17:40:33 수정 2010-11-18 04:04:08

올 197건 중 2건만 몰수 판결
 법원-검찰, 책임 따님기기
 경제환수 대상서도 빠져있어
 재산 숨기면 피해 보전 막막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423호 법정. 이곳에선 추가조작·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일당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이들 중에는 30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업체 대표 박모씨와 불과 한 달간 추가조작 자금을 빌려주고 30%의 고리를 받아 수십억원을 챙긴 사채업자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몰수나 추정 선고는 없었다. 이들은 출소 후 숨겨 놓은 범죄 수익금으로 호화생활이 가능해진 셈이다.

김준규 검찰총장 대책마련 지시

김준규 검찰총장 "범죄수익 환수 방안 마련하라" 지시

입력 2010-11-21 18:17:42 수정 2010-11-22 02:20:04



김준규 검찰총장(사진)은 추가조작이나 횡령사범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한국경제신문 보도와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의무화하는 범죄 대상을 확대하고 범죄자에 대한 피해자의 민사손해 배상 재판과정에서 범죄수익을 몰수해 배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클릭

심재돈 대검 범죄수익환수수사센터장(첨단범죄수사과장)은 21일 "범죄수익 환수를 제고하려는 총장 지시가 있었다"며 "법무부와 협의해 범죄수익환수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재산범죄의 경제학적 성격

- ◆ 재산범죄에 대한 “경제적” 정의
 - 재산범죄: 범죄자 갑이 피해자 을(단수 혹은 다중)의 재산을 부당하게 획득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
 - 구체적 형태: 절도, 강도중 절도적 요소, 사기, 횡령, 배임
 - 절도, 강도 등은 형법 이론의 견지에서는 횡령, 배임과 같은 협의의 재산 범죄와는 구별되지만 경제학적 함의는 유사
- ◆ 재산범죄의 경제적 결과
 - 범죄자 갑은 부당한 이익을 향유, 피해자 을은 재산상 손해 경험
 - 사회적 통제가 없는 경우 범죄자 갑은 추가 행동 유인
 - 피해자 을은 유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어 노력 유인
 - 제3자는 을과 같은 방어 노력을 기울이거나, 갑과 같은 범죄행위 유인 충동을 느낌

5

재산범죄의 경제학적 비용

- ◆ 사회 구성원간의 이익과 손실 그 자체는 경제적 비효율은 아님
 - 다른 추가 효과가 없는 한, 사회 전체로는 제로섬(zero-sum)
 - 효율성 효과는 없고 오직 분배(형평성) 효과만 존재
- ◆ 경제적 비효율은 이를 추구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한 투자에서 발생
 - 생산 증가가 없고 분배 효과만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기 위해 갑(혹은 그 모방자)은 희소한 자원을 투입 => 비효율
 - 기존 생산물을 방어하기 위해 을(혹은 그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자)은 희소한 자원을 투입 => 비효율

6

재산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응

- ◆ (대응 1) 무대응 => 무법천지
- ◆ (대응 2)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통제
 - 을의 재산권은 사회적 보호 AND/OR 갑의 재산권은 사회적 박탈
- ◆ (대응 2-1) 민사적 통제
 - 을이 알아서 갑을 상대로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수행
- ◆ (대응 2-2) 형사적 통제
 - 국가가 알아서 갑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강제조치 집행
- ◆ (대응 2-3) 하이브리드 통제
 - 국가가 알아서 갑을 상대로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수행

7

민사적 통제 vs. 형사적 통제

- ◆ 어떤 사회적 통제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는 “거래비용의 구조(structure of transaction cost)”에 의존
- ◆ 민사적 통제
 - 을이 주도하는 절차이므로 을의 기대효과가 을이 부담하는 거래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민사적 통제가 유효
 - 반대로 을의 기대효과가 작은 경우(ex: 소액 다수 피해자), 또는 을의 존재가 불분명한 경우(ex: 국가나 공공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 민사적 통제의 유효성 저하
- ◆ 형사적 통제
 - 국가가 주도하는 절차이므로 거래비용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
 - 대인적 처벌(*in personam punishment*)의 성격, 강화된 입증 책임 등 형사적 통제에 부수되는 통제 조건의 엄격성이 제약

8

하이브리드 방식: 민사적 환수

- ◆ 민사적 환수(civil forfeiture)의 일반적 특성
 - 범죄자 갑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귀속 주체가 누구이건 그 재산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본질
 - 대인적 처벌(*in personam punishment*) 대신 대물적 환수(*in rem forfeiture*)를 채택함으로써, 형사상 절차에 필수적으로 부가되는 강화된 입증책임 등의 거래비용을 절감
 - 그래도 남아 있는 “국가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대한 사회적 통제”는 법원에서의 민사 재판을 통해 달성
- ◆ 국가와 피해자 을 간의 경합 가능성 통제
 - 국가가 갑의 재산이익 박탈할 경우 을의 재산권 보호 훼손가능성
 - 국가가 손예면 민사적 통제(대응 2-1)로 회귀=> 사각지대 잔존
 - 국가가 이익을 박탈하고 그 이익을 피해자 을에게 보상하는 것이 더 적극적인 해법

9

민사적 환수절차의 실례(1)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EN ESPAÑOL



HOME ABOUT AGENCIES BUSINESS RESOURCES

Home • Office of Public Affairs • Briefing Room • Justice News

JUSTICE NEW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Public Affairs

FOR IMMEDIATE RELEASE

Thursday, April 24, 2014

U.S. Seeks to Recover Over \$700,000 in Kleptocracy Proceeds of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Chun Doo-hwan

The Department of Justice filed a civil forfeiture complaint in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seeking to recover more than \$700,000 in alleged corruption proceeds of Chun Doo-hwan, the former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se monies were seized in February 2014 from the sale of a house located in Newport Beach, Calif., which President Chun's son, Chun Jae Yong, had purchased in 2003 with proceeds allegedly traceable to his father's corruption. The United States is working with the Republic of Korea's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to forfeit these corruption proceeds.

민사적 환수절차의 실례(2)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EN ESPAÑOL

HOME ABOUT AGENCIES BUSINESS RESOURCES

Home • Office of Public Affairs • Briefing Room • Justice News

JUSTICE NEW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Public Affairs

FOR IMMEDIATE RELEASE Wednesday, March 4, 2015

United States Assists Korean Authorities in Recovering Over \$28.7 Million In Corruption Proceeds of Former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Department of Justice has reached [a settlement of its civil forfeiture cases](#) against \$1.2 million in assets in the United States traceable to corruption proceeds accumulated by Chun Doo Hwan, the former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department also assiste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recovering an additional \$27.5 million in satisfaction of an outstanding criminal restitution order against former President Chun.

Assistant Attorney General Leslie R. Caldwell of the Justice Department's Criminal Division, Director Sarah R. Saldana of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and Assistant Director in Charge David Boswich of the FBI's Los Angeles Field Office made the announcement after the settlement was signed and papers requesting that the court execute the agreement were filed with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민사적 환수절차 도입의 필요성

- ◆ 범죄의 목적 그 자체를 제거
 - 재산 관련 범죄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의 획득”
 - 때로는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 사람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범죄의 목적 그 자체를 충분히 제거하지 못함
 - 민사적 환수는 범죄의 목적 그 자체의 제거에 집중하는 제도
- ◆ 현행 범죄수익 환수제도의 사각지대 제거
 - 현재 재산범죄는 당사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국가가 나서서 환수하지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사실상 사각지대 발생
- ◆ 범죄 유인의 예방적 통제
- ◆ 경제정의의 실현

주요국의 민사적 환수 절차(1)

- ◆ 영미권 국가들은 대부분 민사적 환수 절차 도입
- ◆ 미국
 - 연방법에 민·형사적 몰수 모두 규정(18 USC §981 ~ §987)
 - 각 주는 별도의 민사적 환수 절차 보유
- ◆ 영국
 - 범죄수익법(Proceeds of Crime Act 2002)
- ◆ 호주
 - 범죄수익환수법(Criminal Proceeds Confiscation Act of 2002)
- ◆ 뉴질랜드
 - 범죄수익환수법(Criminal Proceeds (Recovery) Act of 2009)

13

주요국의 민사적 환수 절차(2)

- ◆ EU도 Directive 통해 다양한 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동결 및 몰수 절차 도입을 권고
 - PE_CONS 121/13 (2014.3.14 발표)
 - 사람에게 대한 처벌보다 “범죄수익의 제거”의 중요성 강조 => 민사상 환수 절차의 요소
 - 유죄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extended confiscation** 제도 도입을 권고 => 민사상 환수 절차의 요소
 - 조직 범죄에 대한 대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 민간 부문의 부패(**corruption in private sector**)에 대한 대응에도 적용하도록 권고 (Article 3 (f))
 - 부속 문서(CELEX)에서는 배임에 해당하는 범죄를 포함 (Article 2, 1(a) ~ 1(b))

14

Article 2

Active and passive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1. Member States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the following intentional conduct constitutes a criminal offence, when it is carried out in the course of business activities:

- (a) promising, offering or giving, directly or through an intermediary, to a person who in any capacity directs or works for a private-sector entity an undue advantage of any kind, for that person or for a third party, in order that that person should perform or refrain from performing any act, in breach of that person's duties;
- (b) directly or through an intermediary, requesting or receiving an undue advantage of any kind, or accepting the promise of such an advantage, for oneself or for a third party, while in any capacity directing or working for a private-sector entity, in order to perform or refrain from performing any act, in breach of one's duties.

2. Paragraph 1 applies to business activities within profit and non-profit entities.

일사부재리 문제

- ◆ 미 연방 대법원은 민사적 환수는 형사 재판과는 구별되는 절차이고 따라서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 *United States v. Ursery*, 518 U.S. 267, 267-68 (1996)
 - *cf. United States v. \$405,089.23 U.S. Currency*, 33 F.3d 1210 (1994)
 -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의 재산에 대해 국가가 다시 민사적 환수를 추진하는 것(또는 그 반대로 민사적 환수를 받은 사람에게 형사재판을 적용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에 해당하는가?
 -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두 절차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일사부재리 (double jeopardy)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 *Held: In rem civil forfeitures are neither "punishment" nor criminal for purposes of the Double Jeopardy Clause.* Pp. 273-292.

소급 입법

- ◆ 영연방 국가의 경우 과거에 이미 범죄로 규정된 행위에서 유래한 범죄재산의 환수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인정
- ◆ 호주의 입법 사례(제95조)

95 Application of ch 3

(1) This chapter applies in relation to—

(a) a confiscation offence committed or suspected of having been committed at any time, **whether before or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and

(b) a person's **conviction** of a confiscation offence at any time, **whether before or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17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 ◆ 현재 재산 범죄는 당사자가 그 회복을 추구하고, 국가는 당사자의 회복 추구를 위해 이를 “범죄피해자산”으로 규정하고, 환수를 하지 않고 있음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당사자에 의한 회복이 여러가지 현실적 제약 때문에 유효성을 상실
 - 이에 과거 김준규 검찰총장은 범죄수익 환수의 유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지시 (2010.11.21. 한국경제신문)
- ◆ 이번 범죄수익환수법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이를 피해자 구제에 활용
 - 범죄수익 환수의 사각지대 없애고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18

Bajakajian 이후의 입법(CAFRA)

18 U.S. Code § 983 - General rules for civil forfeiture proceedings

(g) Proportionality.—

(1) The claimant under subsection (a)(4) may petition the court to determine whether the forfeiture was constitutionally excessive.

(2) In making this determination, the court shall compare the forfeiture to the gravity of the offense giving rise to the forfeiture.

(3) The claimant shall have the burden of establishing that the forfeiture is grossly disproportional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at a hearing conducted by the court without a jury.

(4) If the court finds that the forfeiture is grossly disproportional to the offense it shall reduce or eliminate the forfeiture as necessary to avoid a violation of the Excessive Fines Clause of the Eight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19

범죄수익은 해당 사항 없음

§ 28-3 The Forfeiture of Proceeds

Under *Bajakajian* and Section 983(g) virtually all criminal and civil forfeitures are potentially subject to challenge on the ground that the forfeiture would be “grossly disproportional to the gravity of the offense,” but the courts appear to be unanimous in holding that the forfeiture of the proceeds of the offense can never be considered disproportional. To the contrary, the courts view the forfeiture of proceeds as precisely calibrated to the gravity of the offense giving rise to the forfeiture.⁷ Therefore, while the Eighth

20

일사부재리와도 무관

c. Why a Forfeiture Can Be “Punitive” for Eighth Amendment Purposes But Not for Purposes of the Double Jeopardy Clause

The reason civil forfeitures can constitute punishment for Eighth Amendment purposes but not for double jeopardy purposes is that the two constitutional provisions address different things. The Eighth Amendment protects against excessive punishments, regardless of what the person is being punished for. In contrast, the Double Jeopardy Clause of the Fifth Amendment protects only against the imposition of multiple punishments for the same criminal offense.

Justice Kennedy began his explanation of this distinction by noting that “civil *in rem* forfeiture is not punishment of the wrongdoer for his criminal offense.”¹⁷⁷ Instead, *in rem* forfeitures are directed at the property owner who is responsible for the criminal misuse of his property. That does not mean that civil

21

감사합니다.

22

토론문

박유기 현대자동차 지부장

한국사회 문제, 재벌체제- ‘개혁’ 또는 ‘해체’ 해야

(현대자동차지부 박유기)

1. 15년, 16년, 현대차 단체교섭을 돌아보면

현대자동차 노사관계를 돌아보면, 매년 단체교섭이 5월, 6월에 시작되고 8월, 9월이면 합의가 이뤄졌는데, 2015년에는 6월 2일 시작된 교섭이 6개월이 지난 12월 30일에 가서야 마무리가 되었다. 1년에 절반을 단체교섭에 매달렸던 셈이다. 그해 핵심 쟁점은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문제”였다.

2016년 단체교섭도 5월 10일 상견례를 시작해서 10월 17일 마무리까지 5개월이 넘도록 진행되었고, 과정에서 29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역사상 ‘최장기 파업’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극심한 마찰속에 진행 되었다.

2016년 회사측이 내세운 단체협약 개약안은 “임금동결, 임금피크제 확대, 임금체계 변경, 단체협약 개약(유일교섭단체, 대체체용, 조합활동보장, 인사경영권 관련조항)”이었다.(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조항까지 표기하며 시정 요구함)

송영섭 변호사님이 발제하신 ‘재벌총수 구속과 전경련 해체’를 살펴보면, 2015년, 2016년 현대자동차 단체교섭이 노사간 자율적인 교섭이 아니라, 정몽구회장과 전경련 의이 청와대에 청탁을 했고, 그들의 뇌물을 받은 박근혜정부가 직접 개입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정몽구회장과 재벌들이 박근혜-최순실이 추진하는 사업들에 뒷돈을 바치면서 “경영권 세습, 회장사면, 한전부지 개발편의, 노사제도 개약, 임금체계 개약”등을 청탁했고, 박근혜는 재벌들의 청탁에 따라서 그들에게 각종 편익을 제공했고,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체계 개약과 단체협약 후퇴를 강제하며 노사관계마저 파국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70년대 유신독재와 이어진 80년대 군부독재시절 횡횡했던 “정경유착”의 추악한 민낯이 대를이어 자행되고 있음에 우리 노동자들은 분노한다.

송영섭 변호사님이 발제문에서 ‘소결’로 정리한 “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의 공모에 의하여 설립된 미르재단 · K스프츠재단에 출연금이 납부되었는바, 이는 제3자에 대한 뇌물 공여에 해당하는바,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 제공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말로 재벌총수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2. 재벌 2세,3세들의 부당재산은 모조리 몰수해야

김남근 변호사님이 작성한 ‘범죄수익환수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읽으면서 삼성의 이재용부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지분을 키웠는지, 다시보게 되었는데,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이다. 글로벌스와 (구)엠코, 이뉴션등의 지분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한 현대자동차 정의선부회장도 별로 다를게 없다.

편법과 불법이 동원된 재벌들의 ‘세습경영’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주고 있다. 태어날때부터 ‘금수저’를 물고나온 재벌 2세, 3세들은 육아부터 교육, 병역, 결혼, 취업, 승진, 경영권획득까지 그들만의 특혜를 누리며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온 그들이 일반 국민들의 삶, 정서를 어찌 알겠는가? 이들의 눈에는 민중들이 “개, 돼지”로 보이는데 당연(?)한 사고인지 모른다. 환화그룹 김승연 회장 아들들의 폭행, 한진그룹 조현아의 땅콩회항, 정주영회장의 손자 정일선사장의 갑질등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들의 반도덕적, 반사회적인 횡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어찌면 당연히 여길지도 모른다.

학업을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며 살아야하는 2017년 1월, 대한민국 청년들. 넘쳐나는 FTA체결로 농축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2012년 12월 21만원하던 쌀 한가마니(80Kg) 가격이 12만원대로 폭락해서 목숨을 처마난 간 동아줄에 걸고마는 농민들(박근혜는 당시 공약으로 쌀값 27만원을 내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일상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임금 삭감과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1천8백만 노동자들. 재벌들이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면서 삶의 도탄에 빠진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넘쳐나는 빈민들.....

2017년, 대한민국 대다수 민중들의 삶이 갈수록 힘겨워 지는데, 사내유보금을 수백조원씩 쌓아가면서 2세, 3세, 4세로 재산과 경영권을 세습하며 ‘재벌천국’으로 치달는 대한민국,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가?

김남근 변호사님이 발제하신 ‘범죄수익환수’에 대해서 관련한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재벌 세습경영과정과 인수합병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범죄수익’에 대해서 철저히 국고

로 환수시키고,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자들을 중죄인으로 사법조치하여 경영권 세습을 차단하는 강력한 관련법을 만들고 시행해야 대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줄어들 것이다.

3. 비자금, 뇌물이 가져오는 '노사불신'

현대자동차 회사측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내세워 비용절감을 강조하고 있다. 회사측은 “체육대회 지원비(1인/3만원, 조합원 5만명 기준 15억)중단, 체육복(1인/9만원, 조합원 5만명 기준 45억)지급 연기, 해외견학 중단”등을 노조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측의 요구에 대해서 노조원들의 반응을 “미르재단, k스포츠, 박근혜-최순실에게는 128억이나 갖다 바치면서 우리에게 뭘 양보하라고??? 에~c8” 이렇게 나타낸다.

현대자동차 노사간에는 매년 “경영성과금을 얼마로 지급 할 것인가?”를 놓고 매년 갈등을 빚어왔다. 그래서 “성과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자는 요구도 해마다 나왔다. 그러나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합의가 안된다. 상식적으로는 회사측에서 주주총회때 제출하는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아니냐고 지적한다.

그러나 문제는 손익계산서에 대한 불신이다.

손익계산서에는 수입과 지출, 그리고 이익이 0원도 틀리지않고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런데, “최순실에게 갖다 바친 128억원은 어디서 나온걸까?”, “2006년 정몽구회장이 마련한 비자금 1,200억은 어디서 만들어 졌을까?”

이러한 비자금, 뇌물들이 들어날때마다 노동자들에게 회사측이 발표하는 ‘손익계산서’마저 불신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회사가 어렵다”고 그만큼 엄살(?)을 부렸던 2016년 중반에 현대차 분기 경영실적이 발표되었다. 그리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회사측 모인사에게 “절단났더니 실적은 그리 나쁘지 않구만”이라고 했더니 돌아온 답변이 “한국경제 전반이 어려운 조건에서 현대차마저 실적으로 낮춰 발표하면 국가경제 전반의 신인도가 영향을 받을까봐 보수적으로 잡았다”

4. “재벌이 문제야. 그러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가중되면서 한국경제의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750조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의 국내 투자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청년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청년실업자가 100만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재벌기업의 위험작업의 외주화, 비용절감을 위한 외주화가 가속화 되면서 중대재해가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에 집중되고, 정규직의 일자리는 줄고, 비정규직노동자가 증가하고, 재벌 기업들의 ‘불법파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와 남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장악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날로 떨어지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줄 도산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문제점 중 상당 부분이 재벌체제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다.

국조특위와 특검, 헌재재판소등을 통해서 세상에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서도 여지없이 재벌들이 공범 또는 주범으로 확인되고있다.

1988년 12월, (고)정주영회장은 청문회에 불려나와 전두환의 일해재단에 뇌물을 받쳤다고 고백했는데, 딱, 28년이 지난 2016년 12월 4일, 정주영회장의 아들 정몽구회장이 국회 청문회에 불려나왔다.

7,80년대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었던 줄로 알았던 “정경유착”이 2016년까지 박정희-박근혜, 정주영-정몽준,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다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국민들은 분개하며, 박근혜 일당과 그에 가담한 재벌총수들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것이다.

자본을 거머쥐고, 이 자본을 앞장세워 정치권, 법조계, 교육계, 의료계, 언론계, 국방계, 심지어 청와대까지, 대한민국 대부분의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재벌들의 통제와 처벌, 개혁, 해체 없이는 이나라 민주주의도 불평등 해소도 불가능하다.

(끝)